

2006. 9.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8.25	2006.8.25	2006.9.18	2006.9.18	세정과장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8.25	2006.8.25	2006. 9. 8	2006. 9. 8	회계과장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	"	"	"
충주시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사회복지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지정(안 제3조)
- 금고지정 기준(안 제4조 및 별표)
- 금고 지정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 금고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지정(안 제6조)

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면서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가액 조정(안 제5조 제2항)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 행정재산·보존재산 수탁자에게 위탁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22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안 제32조)
-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
- 공유재산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40조)

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택견 전수관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견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8조, 별표1)
- 택견전수관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 택견전수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택견전수관의 운영, 관리,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농민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관리(안 제6조)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안 제13조)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위탁(안 제19조)

마.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신축중인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의 준공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충주시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관련조례 폐지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충주시화장장설치 및운영조례
- 신축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안 제10조, 별표2)
- 관외 거주자에 대해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충주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차등적용(안 제10조, 안 제12조)
-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규정(안 제16조, 제23조, 제25조)
-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안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계약 하는 2가지 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금고 지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정기준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에서, 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금고지정방법인 경쟁 또는 수의 방법이 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 제3조 제1항 중
제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으나
 - 제2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 와
 - 제3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조항은, 특혜시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 경쟁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장된다 하겠지만 안 제4조에 의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만의 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 금리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 재정관리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내용은 관리책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 공유임야 관리, 청사 및 관사관리 등
- 기존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주요골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 조의 순서를 장별로 구분, 재편하게 되므로 전부개정 형태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대상 재산가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각종 재산의 단가상승으로 심의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심의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조정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 조례 제22조 제4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해 필요 시 위탁 비용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수탁자간 편의성을 도모코자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용료와 상계 처리할 관리비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인 「외국투자촉진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제40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유지에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조례에는 토지면적이 동지역은 3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7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었으나
- 개정 조례는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수의매각 토지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도 처분대상 토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의 토지주에게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시유지 공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현재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에 근거하여 한국전통택견협회(회장 김구익)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07년 12월 말까지이며 시설의 유지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택견전수관의 설치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에서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한 바,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에는 운영형태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하겠으나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관리 인력 등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충주시농문화체육센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체력단련,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다기능 시설입니다.
- 지난해 12월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시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동 시설을 주덕읍사무소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주덕읍사무소에 정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명의 인력으로 주야간 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등 제반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 사용료 징수에 있어 야간 이용자에게 1인당 2,000원 냉난방 사용자는 시간당 20,0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한 바, 시설 이용자 가 대부분 농촌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할 때 야간 이용료(1인당 2,000원) 징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마.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개정하고 신설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통합과정에서 기존 조례와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은 납골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과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납골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타 장사시설의 운영과 상이한 점이 없어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은 시설투자비와 운영경비 등을 분석하고 타 시군의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였으나 금후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에게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혐오시설 입지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1개 금고 운영시 자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답변 : 그렇지 않다. 타 은행이 대신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질의 :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된 금고계약 기간은 현 조례와 관계 없는가?
 - 답변 : 현재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기간은 약정된 대로 만료되는 것임
- ▶질의 : 평가항목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한가?
 - 답변 : 불가함.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할 것임
- ▶질의 :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삭제할 경우 문제점은?
 - 답변 : 운영상의 문제라 생각함
- ▶질의 : 기간이 만료된 정기예금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답변 : 일반회계는 환매채 매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운용되고 있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음

나.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질의 : 행정재산 위탁관리 시 전대할 경우 사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방법은 있는가?
○ 답변 :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질의 : 시에서 보조 없이 운영되는가?
○ 답변 : 공공요금만 부담하고 있음
- ▶ 질의 : 직영할 경우 인력 증원으로 예산 추가지원 되지 않는가?
○ 답변 : 1~2명 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임

라.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 질의 :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인가?
○ 답변 : 그렇습니다.
- ▶ 질의 :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는가?
○ 답변 : 타시군과 비교하여 물가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 사항임
- ▶ 질의 : 현 관리비는?
○ 답변 : 전기료 8월에 100만원 나왔음
- ▶ 질의 :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어떤가?
○ 답변 : 약간 이용료로 조명 사용에 따른 비용이며 향후 분석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마.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제2조 제1항 제1호의 300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 답변 : 검토하겠음
- ▶ 질의 : 주덕공설묘지 매장 가능 묘지 수는?
○ 답변 : 150기 정도입니다.
- ▶ 질의 : 향후 묘지 소요 현황은?
○ 답변 : 납골당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묘지 신설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원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특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농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 마.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불 임

- 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 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 라.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수정안 1부.
- 마.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경쟁 또는 수의방법”을 “경쟁 방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만, 2회이상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방식을 경쟁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고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지정하는 금고에 대해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쟁실시 횟수와 공고기한은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조 제1항의 기한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1회 이상 및 금고약정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부 칙</p> <p>① (생략) <u>〈신설〉</u></p> <p>②(생략)</p>	<p>부 칙</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금고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지정하는 금고에 대해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쟁 실시 횟수와 공고기한은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조 제1항의 기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1회 이상 및 금고약정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로 한다.</p> <p>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p>

충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4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항의 제목을 '시행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의 사용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정의) _____ _____
1-3.(생략)	1-3.(제정안과 같음)
4. 사용자의 구분 중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하며, “학생”이라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하고 “군인”이라함은 <u>하사관이하의 군인 및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u> 을 말하며,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하고, 65세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부사관</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u>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u>경과조치</u>) 안 제13조의 사용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 <u>신설</u> 〉	